

95530 혼합토 포장

1 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절은 포장공사중 각종 운동장, 산책로 등에 혼합토로 포설 마감하는 포장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혼합토 재료
2. 혼합토 포설시공

1.2 관련 시방절(SECTION)

1. 25300 골재공
2. 95100 화강석 판석 및 포석포장

1.3 적용기준

다음 기준은 이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규격(KS)

1. KS F 2312 흙의 다짐시험 방법

1.4 제출물

"01210 제출서류 및 보고서" 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량 및 제출기한은 발주 시방에 따른다.

1.4.1 시공상태 검측확인서

수급인은 시공전 이 절 "3부. 시공" 내용에 따라 시공상태 검측확인서를 작성·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품질보증

1.5.1 시험시공

혼합토 포장공사 전에 시험시공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기능공에게 시공방법

및 시공주의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시공 부위는 목적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시공량 및 횡수는 발주시방에 따른다. 필요없을 경우 본항은 삭제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혼합용 모래 보관시 강우 또는 비산에 의해 유실되지 않도록 덮개를 설치하고 작업에 방해가 되지않는 일정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2. 혼합용 모래 보관시 지면의 기존토사 및 이물질 등과 혼합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1.7 시공환경 요구사항

- 1.7.1 동절기의 경우 사용재료가 동결된 상태에서 시공을 해서는 안되며 동결로 손상된 포장은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 1.7.2 강우시 또는 명시온도 이하에서는 감리원이 승인한 경우가 아니면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1.8 작업의 연속성

수급인은 혼합토 포장공사 시행전 포장경계재(경계석 등)가 설치된 경우는 양생이 완료된 후에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2 부. 자재

2.1 재료

2.1.1 혼합용 원지반 흙재료

1. 혼합하여 사용될 원지반 토질이 점토성분이 과다하거나 사력, 암, 또는 유기물함량이 과다하게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2. 1항에 해당되는 경우 수급인은 감리원과 협의하에 포장에 적합한 양질토사를 필요량 만큼 치환하거나 추가 부설할 수 있으며 그비용은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다.

2.1.2 혼합용 모래

1. "25300 골재공" 절의 "콘크리트용 잔골재(KS F 2526)의 입도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먼지, 흙, 유기불순물 등이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2.1.3 기타자재

발주시방에 따른다.

2.2 자재 품질관리

2.2.1 수급인은 현장반입자재에 대하여 자재구비요건에 부합되는지에 대하여 감리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2.2.2 대체자재 사용에 대한 사항은 " 05310 재료 및 기기" 에 따른다.

3부. 시공

3.1 시공조건확인

수급인은 현장의 혼합토포장 대상지역의 토질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시공시 제반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감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3.2 시공준비

수급인은 혼합토포장시 토공사가 완료되고 인접한 배수시설과 구조물 공사가 완료되고 뒷채움이 끝난 다음에 실시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암거 및 측구 등을 설치하고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다.

3.3 시공기준

3.3.1 혼합토 포장

1. 원지반을 지정깊이로 막갈기 한후 흙:모래 비율을 3:7로 균일하게 혼합하여 포설한다. 단, 감리원이 승인하는 효과적인 시공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2. 포설시 포설두께는 발주설계도에 명시된 두께로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3. 표면에 노출된 잔돌 및 기타 이물질은 가려내어 외부반출처리 하고 표면을 평탄하게 고르기 하여야 한다.
4. 포장마감면 조성시 주변경계블록 계획고 및 포장계획고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감리원의 승인에 따라 자연스런 표면배수 경사가 되도록 조정한다.
5. 다짐대상 지반이 과다 또는 과소함수비일 경우 최적함수비 상태의 작업이 되도록 흙말림 또는 살수후에 다짐하여야 한다.
6. 집수정, 구조물 주변 등과 같이 다짐이 어려운 지역은 소형 평면다짐기로 다짐 또는 인력다짐으로 철저히 다져야 한다.
7. 혼합토 다짐시 발주시방에 별도 명기가 되지 않은 경우에 『KS F 2312』 에 의한 D다짐으로 최대건조밀도 90% 이상이 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8. 혼합토 포장은 다짐 전후를 막론하고 강우시 물고임이 발생치 않도록 가배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4 시공허용오차

발주시방에 별도 명기된 경우를 제외하고 아래의 허용오차를 따라야 한다.

3.4.1 혼합토 포장면 허용치

검측요청면적이 측정빈도보다 작을 경우는 검측요청면적마다 1회 실시한다

1. 평탄성

(1) 허용치 : 20mm

(2) 측정빈도: 50m² 마다

(3) 방법 : 1개소당 3m 직선자로 반씩 겹쳐서 2회 측정한 최요부값이 평균값으로 한다.

2. 두께측정

(1) 허용치: 10%이내

(2) 측정빈도: [50] []m² 마다

(3) 방법: 수직단면 두께측정

3.5 보수 및 재시공

수급인은 시공후 강우시 배수불량, 유실 등의 손상이 발견될 경우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3.6 현장품질관리

3.6.1 수급인은 시공상태 검측확인서에 따라 사전에 시공상태를 검측확인하고 현장대리인의 서명날인 제출후 감리원 입회하에 시공상태가 적합한지를 검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3.6.2 수급인은 검사시 시공상태가 적합하지않을 경우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